

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

제출인	공익법인명 (감사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전화번호	
	소재지		전자우편주소	

①제출인 구분	☐ 1.공익법인등 ☐ 2.감사인		
②지정 예정통지 내용	지정대상 공익법인등	지정 예정 감사인	지정예정 통지를 받은 날
			. . .
③의견제출 사유 (1~4 중 선택)	☐ 1. 감사인이 「공인회계사법」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☐ 2.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과 감사인 간의 이견이 큰 경우 ☐ 3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정 예정 감사인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☐ 4. 그 밖의 경우		
④의견의 주요내용			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이
의
의

제출인 성명(대표자) : 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장 귀하

첨부서류	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① 신청인 구분란은 1, 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(√)합니다.
2. ② 국세청으로부터 당초 지정 예정통지를 받은 내용(지정대상 공익법인, 지정 예정 감사인, 통지를 받은 날)을 기재합니다.
3. ③ 공익법인(감사인)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시된 항목(1~4)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(√)합니다.
4. ④ 의견제출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며, 상세 내용은 별도의 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